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입법현황

이강린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프라이버시의 권리, 환경권, 일조권을 법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현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 는 경향은 오늘날 헌법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유행으로 되어 왔다.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확고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 서독, 일본과 같이, 우리 구헌법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해석을 통하여 그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1] 그러한 배경에서 현행헌법은 제 16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미국에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980 년에 발표된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에의 권리」라는 논문이다.[2] 그 후 각국은 프라이버시를 법적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인정하여 학설과 판례에서 그 권리성을 승인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전통적 프라이버시는 본래 「사생활」, 「사사」,「개인적 비밀」 등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그 비밀로 하려는 정보를 공개시킴으로써 그 개인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간섭받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be alone) 내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되었다(전통적 프라이버시의 개념).

그러나 1960 년대에 들어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가 국민생활에 깊숙이 진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자료)의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성이 다시 지적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의거한 대책으로는 현실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전통적인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결정 · 통제하는 권리」(새로운 프라이버시의 개념)라는 소극적, 적극적 자기정보관리권적 권리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두 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게 한다.

선진제국은 이미 1960 년대에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검토해 왔다. 그리하여 1973 년에 스웨덴은 최초로 「데이타법」을 제정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미국, 서독,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이스라엘이 그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요주는 개개 국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에서 그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3] 이사회는 1980 년 9 월 23 일에 「개인 데이타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라는 OECD 권고를 6 개국 3)이 기권한 가운데 채택하고, 동년 10 월 1 일 공표하였다. 그 권고는 가맹국에 대하여 ① 가이드 라인에 제시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제원칙을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실시하는 경우에 고려할 것, ②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데이타의 자유로운 국제유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③ 가이드 라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호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급격한 공업화 · 산업화에 따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 왔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기록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 ·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의 여부, 암 · 당뇨병 · 고혈압 환자의 등록, 요구보대상자의 해당여부, 종합소득세제의 실시, 부동산소유 카드제의 실시, 주민등록번호제의 실시 등이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수집·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보험업의 확장, 백화점업 또는 판매업체의 경쟁, Credit Card 에 의한 신용거래, 할부판매제에 의한 신용거래에 의하여 개인의 각종 정보가 사기업체에 집적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성명 · 성장 · 주기 · 생년월일 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용도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실 그 번호는 전산화된 개인정보관리에 있어서 standard universal identifier 로서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간편하기 때문에 무제한 않은 정보를 in-put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역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 존재인 computerized personal data bank, 실제로 그 programmer 나 권력자 앞에서 자기에 관한 어떠한 것도 숨쉴 수 없는 알몸으로 어항속의 금붕어」와 같이 서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날 모든 국민이 자기의 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4] 더욱 우리 헌법은 제 16 조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5]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화를 측진하고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각국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입법동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미국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

1. 서설

미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합중국헌법을 비롯하여 연방과 주의 각종의 법률에 부산되어 있다. 연방정부를 규제하는 법률로서는 1974 의 프라이버시법이 있고,그 이외에 1978 년의 금융프라이버시법, 1970 년의 공정신용보고법, 1976 년의 세개혁법 등이 있다. 프라이버시법의 기본이념을 의미하는 정부보유의 정보는 공개 내지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한 법의 절차」 (due process of law)의 원칙으로부터 생성된 것인데, 정보공개법과 그 기반을 같이 하고 있다.

1974 년의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 Pub. L. No. 93-579, 이하 「PA)라고 칭함)은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1974 년 12 월 17 일, 18 일에 상 · 하양원에서 각각 심의·통과되어 법률로 성립되었다. 이 법은 전문 9 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제 3 조와 제 4 조이다. 제 3 조는 「공개의 기록-행정기구의 규칙·의견·명령·기록 및 의사록」이라는 조문색인에 있는 연방법전 제 5 장 제 552 조 다음에 「개인에 관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제 552a 조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전 제 5 장을 개정하는 조항이고 제 4 조는 제 552 조 바로 아래에 「552a 개인에 관한 기록」을 삽입함으로써 그 제 5 장의 목차를 개정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본래 이 법은 「연방의 기록오용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연방기구에 보유된 자기의 기록에 접근(access)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를 설치하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제 552a 조를 추가함으로써 연방법전 제 5 장을 개정하는 법률」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흔히 「1974 년 프라이버시법」으로 인용하고 있다.

PA 는 연방정부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부분은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민간부분을 규제하는 법률은 신용정보조사기관을 규제하는 「공정신용보고법」 이나 자녀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The Family Educational Act) 등이 있을 뿐, 일반적으로 개인데이타의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은 없다. 그러한 미국의 법제화 상황은 물론 유럽 제국으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결과를 가져 왔고 그것은 미국정부의 큰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상무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법제화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다. 바로 정부는 민간기업이 OECD 이사회 권고의 취지에 찬동하여 자주적으로 그 대책을 강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7] 한편 PA 는 제정 이후 지딘 10 년간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은 정보의 수집 · 축적 · 반포방법에 1 세기에 해당하는 변혁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에 의한 은행업무, 쌍방간의 TV 등이 모든 가정과 사무소에 큰 영향을 주고 개인이나 영업소나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의 문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PA 는 국내외적으로 그 개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PA 의 주요내용

1) 사실인정과 입법목적

첫째로 PA 는 제 2 조(a)항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 ㉡ 컴퓨터 및 정보기술의 이용증대는 정부의 능률적 활동에 불가결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프라이버시의 위협을 확대시킨다는 점, ㉢ 개인의 취직 · 보험가입 등의 기회가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더욱위험하게 된바는 점, ㉣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 ㉤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연방행정기관의 정보활용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열하고 있다.

둘째로 PA 는 제 2 조(b)항에서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PA 의 목적은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행정기관(Federal Agency)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개인에 대하여 자기기록의 행정기관에 의한 수집 · 보관 · 이용 또는 분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 개인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얻은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입법 현장에 관한 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타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 개인에 대하여 연방행정기관의 기록 중 자기에 관한 정보에 접근(access)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identifinable personal information)의 수집 · 보유 · 이용 또는 분포하는 활동이 필요하고도 합법적이며, 정보가 가장 최신성 · 정확성을 가지며 정보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하여 행사될 것. ㉤ 이 법률이 규정하는 기록에 관한 적용배제는 중요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것. ㉥ 본법상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고의적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

2) 용어정의

PA 는 5U.S. C., 제 552a 조 (a)항에서 애매한 용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행정기관(agency)이란 연방법전 제 5 장의 제 552 조 (e)항에서 정의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5552a(4)) . PA 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바로 PA 는 어떤 단위를 가지고 행정기관으로 보는가에 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8] ㉡ 인 (invidual)이란 미국시민만이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점은 정보공개법에서 「any person」이라고 규정한 것과 다르다. ㉢ 보유한다(maintain)는 것은 보유 · 수집 · 이용 또는 배포함을 의미한다. (§552a(a)(3)) ㉣ 기록(record)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수집; 부류를 말하며, 교육 · 금전(financial)거래 · 병력 · 범죄력 또는 직업력만이 아니라 성명 · 식별번호를(identifying number) 기호 및 지문 · 성문(voice print) · 사진과 같이 개인을 특정하는 식별사항(identifying particular)을 포한한다. (PA. §3, 5U. S. C., 3552a (a) (4)). ㉤ 기록시스템(systemof record)이란 개인의 성명 식별번호 등에 의하여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관리아래에 있는 기록의 집단(group of any records)을 말한다. ㉥ 일상적 이용(routine use)이란 정보가 수집된 목적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 이용의 범위는 용어정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애매하다.

3) 기록개시의 조건

어떠한 행정기관도 기록관계자의 사전서면동의 또는 서면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에게나 어떠한 행정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통신수단에 의하여도, 기록을 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기록개시에 관하여 엄격하게 그 조건을 정해 놓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9]

㉠ 직무수행상 기록을 필요로 하는 기록보유 행정기관의 공무원(officers and employes)에 대한 공개.

㉡ 본장 제 552 조의 요구가 있을 때. 이 경우는 FOIA 에 의한 공개를 의미한다.

㉢ 일상적 이용을 위한 공개.

㉣ 국세조사 등을 위한 국세조사국(Bureau of thecensus)에의 개시.

㉤ 그 기록이 통계조사 또는 보고기록으로서만 사용되고 또한 그 기록이 개인을 측정할 수 없는 형태로 변개될 것을 사전서면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확약을 한 기록접수자에 대한 개시.

㉥ 영속적 보존을 위한 역사적 또는 기타의 가치를 가지는 기록을 연방국립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에 공개하는 경우 또는 그 기록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Administ,ator of General Service) 또는 그 지정자에게 개시하는 경우.

㉦ 법적으로 인정된 민사상, 형사상의 법집행활동을 위하여 바른 행정기관에 개시하는 경 우 및 기록보유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장 등이 법집행상 기록의 필요로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청한 경우의 개시.

㉧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상황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한 개시로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 개인의 주소에의 통지,

㉨ 연방의회의 양원 중의 일원에의 개시, 원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합동 위원증 또는 동 소위원회 등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사항에 관한 기록의 개시.

㉩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임무수행의 과정에서 회계검사원장(Compt-

roller Ceneral)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개시.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개시.

4) 기록개시에 관한 해명

기록의 개시를 엄격히 하고, 개시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위하여 개시를 행한 행정기관이 해명을 하도록 본법은 규정하고 있다.[10] 즉, ㉠ 각 행정기관은, 직무집행상 기록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의 기록공개 및 FOIA 에 의한 기록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하는 기록의 개시일자 ·개시성질·개시목적과 기록개시를 받은 사람 및 타행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정확한 해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그 해명서는 기록공개일로부터 최소한 5 년간 또는 기록의 수명에 따라 더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바. ㉢ 민사 · 형사의 법집행을 위한 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명서는 기록의 장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입수되어야 한다.

㉣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 수정 또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 사실을 개시받는 어떠한 사람에게나 행정기관에 대하여서도 알려야 한다.

5) 기록에의 접근(Access to Record)

PA 는 개인의 자기기록에 대한 열람·수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신용보고법보다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사기업인 흥신소에 대하여서 보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개인의 권리보장이 실현되어 있다. 동법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1] 기록시스템을 보유하는 각 행정기관은, ㉠ 개인이 자기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열람(review)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copy)를 허용해야 하며, ㉡ 개인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기록의 정정을 요구함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i) 청구의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ii) 그 개인이 자기정보를 정확 · 적정(relevant), 적시(timely)에 완전한 것이라고 믿지 아니할 때에는, 그 부분을 즉시 정정하거나 또는 기록정정요구의 기각·기각이유·기각에 대한 재심사청구절차· 재심사담당공무원의 성명을 그 개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기의 기록수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기각에 대하여 불복하는 개인에게 재심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심사청구가 제기되면 30 일 이내에 종국재결(final determination)을 내려야 한다.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때에는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간단한 불복이유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법심사의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서를 제출 · 첨부한 정보 및 심사청구를 행한 정보를 개시할 때에는, 개인의 진술서 및 행정기관의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보접수인에게 개시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의무

제 552(a)조 (e)항은 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에게 기록의 수집·보관 배포에 있어서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즉 기록시스템을 보유하는 각 행정기관은 ㉠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관련이 있고 필요한 인적정보만을 보유하여야 되며, ㉡ 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불리하게 판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직접 본인으로부터 수집해야 하고, ㉢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개 인에게 정보수집에 사용되는 서면과, 정보요구권의 근거 및 정보제출의 강제성 여부, 정보이용 목적, 정보의 일상이용,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 연 1 회 기록시스템의 명칭·소재·기록된 개인의 범위·기록의 범위·이용목적 이용자의 범위 등을 포함한 일상이용, 기록의 저장·검색·접근통제 · 보유 및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의 방침 및 실제운용, 기록시스템에 대한 책임자의 이름 및 직장소재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개인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든 기록은 개인에게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정확성 · 적절성 · 현실성 · 완전성을 가져야 하며, ㉥ 행정기관 이외의 자에게 정보를 공재할 때에는,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며, ㉦ 수정 1 조에 보장된 권리 즉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권, 청원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유 할 수 없고, ㉧ 개인에 관한 기록이 법적 강제절차에 의하여 어떤 누구에게 이용가능 하게 되고 그 절차가 공적 기록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 기록시스템의 설계 · 개발 · 운용 및 기록보유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기타의 규칙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규정하여야 하며, ㉩ 기록의 안전비밀의 확보, 개인의 손해 · 불편 ·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기술상·물리상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정보신규이용의 경우에는 연방공보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규칙제정

기록시스템을 가지는 모든 행정기관은 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규칙에는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의 기록에 관한 통지를 받는 절차, 개인의 요청에 의한 기록의 공개절차, 수정요구에 대한 심사절차, 기록수정의 수수료, 복사대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8) 민사구제

PA 는 여러가지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구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어떠한 행정기관이라도, 개인이 요구하는 기록의 수정을 거부하거나 기록의 열람 · 복사를 거부하거나, 개인의 자격 · 기회 ·권리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록의 정확성 · 적절성 · 완전성 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 수정거부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행정기관에게 원고의 뜻에 따라 기록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을 때에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소송내용을 연방에 부담시킬 수 있다.

㉢ 복사 및 열람 금지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기록의 억류를 금할 것을 명령하고 신청자에게 기록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의 억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의 내용을 비공개(in camera)로 심사할 수 있으며, 기록억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기관에 있다.

㉣ 기록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기관에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방은 개인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actual damage)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000 달러 이하는 있을 수 없다.

9) 벌칙(Criminal Penalties)

PA 는 또한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위반, 개인의 사술로 인한 정보취득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12] 즉 ㉠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알게 되고, 그 기록의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고의로 권한없는 개인 또는 타기관에게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공개하였을 때에는 경범죄에 해당되며, 5,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떠한 행정기관의 어떠한 공무원도 연 1 회 연방공보에 공고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기록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전호와 같다. ㉢ 어떠한 사람도 사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에 관한 기록을 요청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도 전호와 같다.

10) 일반적용제외

행정기관의 장은 5U. S. C., §553 에 따라, 행정기관의 기록시스템을 본법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13] 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법에서 정한 사항은 ㉠CIA 가 보유하는 기록시스템 및 ㉡ 범죄예방 범인체포 등의 경찰작용, 경찰, 법원 · 교도소 등 의 업무를 포함하는 형사법집행에 관한 활동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범인 · 피의자에 관한 정보,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또는 체포·기소에서 감시해제에 이르는 형사법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것이다.

11) 특별적용배제

PA 에 대한 특별적용배제도 전항의 일반적용배제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기관의 장이 규칙 을 제정하여야 한다.[14] 이 특별적용배제란 본법중의 일정한 조항이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 또는 외교정책상 비밀에 부쳐질 것이 행정명령으로 정하여진 기록시스템, 대통령, 또는 기타 인물의 경호 임무에 관한 기록시스템, 통계기록으로서만 사용되도록 법이 정한 기록시스템, 연방의 문관고용 · 병역(military service)등의 적격성 자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집한 조사자료에 관한 기록시스템, 연방공무원의 임명·승진을 위한 시험 및 검사의 자료로서 그 공개가 시험 · 검사 등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록 및 군인의 승진에 관한 평가자료 등이 바로 그것이다.

12) 프라이버시연구위원회

PA 는 프라이버시보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15] 그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 인, 상하양원의 의장이 2 인씩 지명하는 4 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민권 · 법률 · 사회과학 · 컴퓨터 기술 · 실업 · 자료처리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및 대리인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입수할 수 있다.[16] 위원회는 예산 요구·입법건의 등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때에 는, 그 서류의 사본을 언제나 연방의회에도 동시에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은행 자동자료관리계획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보시스템 · 사적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하며, 대통령과 의회에 대하여 프라이버시법의 5552a 의 원칙과 의무가 입법·행정 등의 정보취급을 하는 기관에는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건의하여야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필요한 입법을 건의하여야 한다.[17] 위원회는 본법이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즉 수동식서류철(Manual File), 컴퓨터·기타 전자식 또는 telecommunication의 수단에 의한 주 상호간의 개인정보전달, 개인의 프라이버시·재산권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은행 및 정보 시스템의 운영, 자료은행 등에 있어서 개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번호 · 운전면허번호 · 보편적인 확인기호를(universal identifier) 기타의 징표를 사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의료 · 보험 · 교육 · 고용 · 흥신소 · 은행 · 여행 · 호텔 오락장 예약 · 수표의 전자식처리 등의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발굴활동도 연구하여야 한다.[18]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채택하며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출석과 증거제출을 요구하며, 선서를 시킬 수 있다.[19]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공무원인 자는 부가적 보수를 받지 아니하며, 직무집행에 관한 일당을 받고 여비 등의 보수를 받는다. 든 위원에게는 직무상 지득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이 금지되며, 고의적 공개가 있으면 어떤 형태에 의하거나 경범죄를 구성하며, 5,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20]

13) 기타 규정

프라이버시법에서 상술한 규정 이외에도 기록시스템을 운용하는 정부계약자와 그 직원에게 행정기관과 같은 의무를 과한 규정, 주소록의 판매임대금지,[21] 기록시스템의 신실·변경을 하고자 하는 각 정부기관의 의회 또는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의 사전보고,[22] 매년 6 월 30 일까지 전년도의 적용제외조항에 의한 적용제외 기록의 건수·적용제외이유 등을 상하양원 의장에게 보고할 대통령의 의무 및 어떠한 행정기관도 본법에 의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억류하기 위하여, FOIA(정보자유법)의 적용제외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23]라는 규정 등이 있다.

Ⅲ. 스웨덴의 데이터법

1. 서설

스웨덴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0 대 후반으로 다른 북구제국과 비교할 때 그 문제가 가장 늦게까지 일반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스웨덴을 프라이버시 후진국으로 만든 이유는 흔히 첫째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스웨덴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1776 년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The Freedom of the Press Act)이 스웨덴 헌법의 일부로서 제정되어 모든 국민에게 공문서에 대한 접근(access)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24)]

그러나 스웨덴은 1966 딘 국제적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북구각료평의회의 권고에 따라 스웨덴 프라이버시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급속히 논의되게 되었다.

바로 1966 년 여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 24 회 북구법률가회의는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루었고, 또한 1967 년에는 스톡홀름에서 국제프라이버시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그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립법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25)] 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① 도청방지, ② 사진촬영과 프라이버시, ③ 상업광고와 프라이버시. ④ 사적 생활의 평화에 관한 사항이다.[26)] 물론 그 내용의 일부는 입법화되었다.[27)] 1975 년 형법을 개정하여 형법전에 「불법도청죄」를 추가로 규정한 것,[28)] 1978 년의 「상업광고에 있어서의 타인의 성명 및 초상의 무단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29)] 이라는 개별법을 입법화한 것,「감시용 TV 카메라 규제법」[30)]을 입법화한 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

한편 스웨덴정부는 첫째로 스웨덴사회에 있어서도 컴퓨터화가 1960 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개인정보처리에 컴퓨터화가 진전됨으로써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화 된 개인정보의 공개의 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바는 점, 둘째로 1969 년 유럽평의회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짐에서 위의 프라이버시위원회와는 별도로 컴퓨터화에 따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로서 「공문서의 공개와 비밀에 관한 위원회」(The Commission on Publicity and Secrecy of Official Documents)를 설립하였다. 그 위원회는 「데이타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은 1973 년에 세계에서 최초의 데이터법(The Data Act)으로 제정되었다(전반적 실시는 1974 년 7 월 1 일). 그 데이타법은 이미 1975 년, 1979 년, 1981 년에 걸쳐 3 차에 이르는 부분 개정을 하였다.

2. 데이타법의 특색과 개정

1) 데이타법의 특색

스웨덴의 데이타법은 전문 25 조 5 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차를 보면 총칙규정이 제 1 조에,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제 2 조에서 제 7 조에 걸쳐, 기록책임자의 의무가 제 8 조에서 제 14 조에 걸쳐,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제 15 조에서 제 19 조에 걸쳐, 형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이 제 20 조에서 제 25 조에 걸쳐 규정되고 있고, 마지막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 총칙규정

총칙을 규정한 제 1 조는 개인자과, 개인기록, 피기록자 및 기록책임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 데이터검사원과 허가 · 감독 등 데이터법 제정과 동시에 데이터검사원(The Data Inspection Board)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기관으로서 스웨덴의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독립기관이다. 데이터검사원은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위원장(데이터검사원 원장)은 정부에 의해서 선임되지만 재판관의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임기는 없으며(사무국 직원과 같이 임기의 제한이 없음), 위원장을 제외한 10 명의 위원은 정당, 노동조합, 산업계, 공적 기관, 컴퓨터기술자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4 년이다. 또한 데이터검사원은 허가부, 감독부,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직원의 정원은 24 명이다. 그러나 약 20 명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한 직원은 법률가이거나 기술자이다.

컴퓨터에 의해서 개인기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데이터검사원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기록의 데이터화가 의회 또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데이터검사원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미리 데이터검사원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 2 조).

데이터검사원은 개인기록의 데이터화의 허가신청이 제출된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동법 제 3 조). 한편 데이터법은 개인기록의 데이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기록의 데이타화를 허가제로 함과 동시에 데이타법의 완전한 실시를 위하여 데이터검사원에게 강력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 15 조).

데이터검사원의 권한 중에는 허가권 이외에 컴퓨터의 출입검사, 기록책임자에 대하여 컴퓨터 관제에 관한 업무자료의 제출명령, 컴퓨터 업무의 정지, 무허가데이타 자료의 몰수, 허가 의 취소와 변경, 허가함에 있어서의 조건부여의 권능, 컴퓨터자료의 외부제공 특히 국외로 지출하는 경우의 승인관과 같은 감독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 16 조-제 18 조).

또한 그 데이타법은 개인기록의 데이터화의 업무에 종사한 모든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통해서 지득하게 된 개인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시키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특히 데이터검사원에서 허가, 감독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밀 이외에 그 업무를 통해서 지득하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해서도 비밀수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동법 제 13 조, 제 19 조) .

㉢ 기록책임자의 의무

기록책임자라 함은 그 자가 명령하면 그 자의업무를 위하여 개인기록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 1 조 4 항). 그 데이터법은 기록책임자로 하여금 언제나 데이타 기록의 정확성을 체크해서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동법 제 8 조 1 항, 제 9 조). 한편 피기록자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자기의 데이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료개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기록자는 1 년에 1 회 원칙적으로 무료로 기록책임자로부터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기록자로부터 자료의 청구를 받은 기록책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조속히 자료청구자의 개인자료를 청구자 본인 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제 10 조).

그리고 자료청구자의 개인자료가 기록책 임자의 수집된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 10 조 1 항).

기록책임자는 개인기록의 데이터화를 중지한 경우에 그 뜻을 데이터검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 12 조) , 또한 개인기록의 데이터화의 업무에 종사한 결과 지득하게 된 개인의 사 적 사정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13 조).

㉣ 데이터법 위반과 벌칙

데이타법은 제 20 조에서 제 24 조에 걸쳐 데이터법 위반과 그 경우에 있어서의 별칙과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데이타법의 위반이라 함은 고의·과실에 의해서 ① 무허가로 개인기록을 데이터화한 경우, ② 기록책임자가 개인기록을 데이터화 한 경우, 개인기록을 데이터화 함에 있어서 이미 데이터검사원에 의해서 부여받은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데이터 검사원의 승인없이 개인데이타자료를 외부 혹은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④ 데이터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해서 피기록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가 허위의 자료를 통지한 경우, 혹은 데이터검사원에 대하여 데이터자료의 제출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데이타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1 년 이하의 정역 또는 별금형이 과해진다(동법 제 20 조) .

데이타의 침해라 함은 개인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기재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 또는 입수하려고 한 경우 또는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개인기록을 개조·말소한 경우 또한 그 개조 · 말소한 기록을 다른 기록에 끼어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경우 데이타 침해죄가 되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과해진다(동법 제 21 조).

피기록자는 데이타기록에 틀린 것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은 때에는 물론 정신적 손해를 입은 때에도 기록책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 23 조).

한편 데이터검사원은 기록책임자 혹은 그 보조자가 데이터검사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데이터검사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데이터 검사원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 24 조).

2) 데이타법의 개정

데이타법의 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3 차에 걸쳐 단행되었으나 1979 년과 1981 년의 개정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9 년의 데이타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물론 그것은 스웨덴정부가 1976 년 5 월에 설치한 데이터법제위원회(The Committee on Data Legislation)에서 제안하여 의회의결로써 개정된 것이다.

첫째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술적 설비에 보유되고 있는 개인 File 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 2 조 3 항).

둘째로 종래의 데이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기록의 규제에 관한 조항(제 3 조 (a))을 폐지시켰다.

세째로 기록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판단 또는 평가를 포함한 개인데이타, 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이타에 관해서는 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 6 조 2 항).

1981 년의 데이타법의 개정은 데이터법제위원회가 중앙국민인구등록청의 국유개인 · 주소화일(The State Personal and Address File)에 관한 규제를 제안하여 채택된 것이 그것이다.

국유개인 · 주소화일은 인구등록청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그것은 식별번호(identifier number)의 통제, 각종의 목적을 위한 기타의 등록이나 인구샘플의 현행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 개정내용은 제 26 조에서 제 28 조에 걸친 3 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데이타법은 공적 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적용되지만, 개정 데이타법은 특히 제 26 조에서 「본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유개인 · 주소화일을 설치한다. 그 화일은 자동데이타처리에 의해서 관리된다. 국유개인·주소화일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이용된다. ① 다른 개인화일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타의 현재성을 유지·보완 및 체크하기 위하여, ② 데이타 일반의 보완 및 체크하기 위하여, ③ 개인데이타의 샘플을 얻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Ⅳ. 서독의 연방데이타 보호법

1. 서설

서독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법해석론을 통해서 인정되었고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일환으로 학설과 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1970 년 헷센주에서 「데이터보호법」[31]이 성립되고, 1974 년에는 라인란트· 팔쯔주에서 「데이터남용방지법」[32]이 제정된 이후 1977 년 1 월 27 일에 「연방데이타보호법」[33] (「데이터처리에 있어서 개인에 관한 데이터남용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1978 년 1 월 11 일 발효, 최종적으로는 1979 년 1 월 1 일 발효). 그후 서독의 각주는 계속하여 각각 데이타보호법을 제정하였다.[34] 데이타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방유출법」도 개별적 연방법률로서 1980 년 8 월 16 일에 제정되었다.[35] 따라서 서독의 프라이러시의 보호법은 「연방데이타보호법」과 각주에서 제정된 「데이터보호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컴퓨터에 의한 데이타 처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점점 그 긴장관계를 더욱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독에서는 그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도를

설치하고 많은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그러한 모든 것은 광범한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연방데이타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연방데이타보호법의 개요와 골자

1) 연방데이타보호법의 구조

연방데이타보호법은 6 장 47 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1 조~6 조)은 총칙, 제 2 장(7 조~21 조)은 관청 기타의 공적 주체에 의한 데이타처리, 제 3 장(22 조~30 조)은 비공적 주체에 의한 자기를 위한 데이타처리, 제 4 장(31 조~40 조)는 비공적 주체에 의한 제삼자를 위한 업무상의 데이타처리, 제 5 장 (41 조와 42 조)은 벌칙, 제 6 장(43 조~47 조)은 경과규정 내지 최종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입법목적과 보호대상

연방데이타법은 그 목적에 관하여 「데이타보호의 목적은 개인에 관한 데이타를 그의 기억,제공, 변경 또는 해제함에 있어서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데이터당사자의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36](동법 제 1 조 1 항). 동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데이타」[37]로서 관청 또는 그밖의 공적 주체만이 아니라 자연인 또는 사법상의 법인, 기타의 단체에 의해서 데이타화일(eine Datei)[38]에 있어서의 기억, 변경 내지 해제하거나 데이타화일에서 제삼자에 제공하는[39]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동법 제 1 조 1 항 1 문). 다만 개인데이타가 제삼자에 대한 제공에 이용되지 않음이 명확하거나 자동처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될 경우(동법 제 1 조 2 항)와 「신문 · 방송 ·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그 보조기업으로써 오로지 자기의 보도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하는 개인데이타」(동법 제 1 조 3 항)는 예외이다. 그 예외의 경우에는 제 6 조(기술적 및 조직적조치)가 적용된다. 연방데이타법은 비공적 기관에 의한 개인데이타의 처리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주법과 다르다.

3) 규제대상

연방데이타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청과 기타의 공적주체(동법 제 7 조)만이 아니라 자연인 및 사법상의 법인과 기타의 단체 (이하 비공적 주체라 칭함)에도 적용된다. 동법은 그 비공적 주체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데이타를 처리하는 비공적 주체이고, 다른 하나는 제삼자를 위한 영업으로서 개인데이타를 처리하는 비공적 주체를 말한다. 전자에는 제 3 장의 규정이 적용되고 후자에는 제 4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공적 주체는 또한 업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동법 제 31 조 1 항). ① 개인데이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 ② 개인데이타를 기억하고 그것을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익명화하여) 그 익명화된 데이타를 제공하는 것, ③ 제 3 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업으로서 개인데이타를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의 주체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부발행업자, 신용조사기관이 그것에 해당한다 ②의 주체는 시장조사기관이나 앙케이트 조사기관이 그것에 해당되고, ③의 주체는 키-편치회사, 계산센터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수적으로 보면 ③의 주체가 가장 많은데, 서독에는 약 2 만 5 천개 회사가 있다.

제 4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에 의한 데이타처리는 제 3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에 의한 데이타처리와 비교하여 개인데이타가 남용 될 위험성이 크고 뿐만 아니라 남용된 경우의 영향도 크다. 따라서 제 3 장의 주체에 대한 규제 보다 제 4 장의 주체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

4) 데이타처리의 허용요건

개인데이타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① 연방데이타보호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② 데이타당사자의 동의(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 4 장의 ①의 주체 즉 개인데이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주체에 의한 데이타처리가 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데이타의 기억은 데이터당사자의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동법 제 32 조 1 항 1 문).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타(일반적으로 공용된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은 무조건으로 허용된다(동조항 2 문).

㉡ 개인데이타의 제공은 그 제공을 받는 자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동법 제 32 조 2 항 1 문). 그러나 동일한 집단을 구성하는 자에 관한 데이타로서 일람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 데이타가 성명, 칭호, 학위, 주소 내지 데이타당사자 등이 모두 당해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또한 데이타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당사자의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제 32 조 3 항).

㉢ 개인데이타의 변경은 데이터사업자의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 33 조).

㉣ 개인데이타의 삭제는 데이터당사자의 보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 35 조 3 항 1 문).

5) 데이터처리주체의 의무

개인데이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경우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어떤 데이터당사자의 개인데이타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당사자에게 그 데이타가 기억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아니된다(데이터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 34 조 1 항 1 문). 그러나 제 32 조 3 항에 의거하여 기억한 개인데이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 34 조 1 항 2 문) 그러한 통지의무는 첫째로 개인데이타의 개시가 제삼자의 우월적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둘째로 당해 데이터주체를 감독하는 공적기관에 의해서 개인데이타의 개시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거나 연방 또는 주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제 34 조 4 항).

㉡ 부정확한 개인데이타는 정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제 35 조 1 항).

㉣ 개인데이타의 정확성이 그 데이터당사자에 의해서 다툼이 제기되고, 그것의 정확성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데이타는 봉쇄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35 조 2 항 1 문) . 또한 기억한 이후 5 년이 경과한 데이타도 봉쇄하지 않으면 안된다(계 35 조 2 항 2 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데이타를 삭제(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그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 35 조 3 항 2 문 전만), 둘째로, 제 35 조 2 항 2 문의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당사자가 삭제를 청구한 경우(동항 동문 후만) , 째로, 건강상태, 질서위반 내지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에 관한 데이타에 대해서는 데이타처리의 주체가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동항 3 문)가 그것이다.

한편 개인 데이타를 기억하며, 그것을 익명화시킨 이후 제공하는 경우의 주체는 그 기억시킨 개인데이타를 익명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제 36 조 1 항 1 문) . 또한 익명화시킨 데이타를 특정한 개인에 결부시키는 지표는 익명화시킨 데이타와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동항 2 문).

또한 서비스업으로서 개인데이타를 처리하는 경우의 주체는 위탁자가 지시한 범위내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 37 조) . 수탁자인 그 주체의 행위에 대한 규범은 위탁자의 지시만이고, 위탁자는 본법과 기타의 법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6) 감독기관

데이터보호법은 데이타보호를 위한 통제, 감독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데이타처리기관의 「내부통제」와 제삼자통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적주체의 영역에서는 제 15 조, 제 16 조에 비공적 주체의 영역에서는 제 28 조, 제 29 조, 제 38 조(데이터보호 수임자)에 규정되어 있다. 후자는 공적 주체의 데이타처리에 관해서 연방데이타 보호수탁관(제 17 조에서 제 20 조에 걸쳐)을 두고 있으며, 비공적주체의 데이타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감독하고 있다 (제 30 조, 제 40 조) .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은 이른바 옴부즈맨의 일종으로, 연방정부의 발의를 받아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고(제 17 조 1 항), 그 임기는 5 년이며 1 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다 (동조 2 항) .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 연방데이타보호법 및 부속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연방의 공적기관을 감독하며, 데이터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연방정부와 장관 및 여러 관청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제 19 조 1 항).

㉡ 연방중의원 또는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연차활동보고서를 독일연방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2 항).

㉢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의 감독하에 있는 관청과 기타의 기관은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의무의 내용은 개인에 관한 데이타처리에 관련한 모든 기초자료, 서류 특히 기록된 데이타와 데이터처리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수탁관의 질문에 회답하고, 그 열람을 허락하는 일, 모든 집무실에 입실을 허락하는 일(동조 3 항 1 호·2 호).

㉣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자동운전데이타집적체의 등록부를 비축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열람시킬 수 있다. 그 감독하에 있는 관청은 그 데이터집적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동조 4 항).

㉤ 연방데이타보호 수탁관은 주에 있어서 데이타보호를 위한 감독관청과 협력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동조 5 항) .

비공적기관에 설치된 데이터보호수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한다.

데이터보호법규의 실사를 확보하는 일, 그 목적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조회하는 일을 한다. 또한 특별히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기록된 개인데이타의 종류, 인데이타를 필요로 하는 영업목적·목표, 보통의 데이타수령장, 사용전 전자데이타처리기에 관한 일람표를 정비하는 일, ㉡ 데이타처리프로그램의 적법한 적용을 감시하는 일 ㉢ 데이터처리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데이타보호법규를 숙지시키는 일, ㉣ 데이터처리종사자를 선택하여 조언자로서 협력하는 일이 그것이다.

V. 일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입법동향

1. 서설

일본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하여 왔으나,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하였고 국내외적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입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1981 년 1 월 29 일 행정관리청은 법무성의 협력을 얻어 「프라이버시 보호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연구회를 조직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40] 일본은 1975 년 4 월 행정감리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등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 년이상 조사검토를 하고 중간보고서도 작성되었으나, 프라이러시보호문제의 복잡성과 다기성, 이미 입법화된 국가에 있어서의 운용문제, 개인의 권리·이익과 사회공공의 이익과의 조정에 관한 여론의 동향때문에 바로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동향을 살피기로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후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생성되었다. 첫째로 국제적 동향을 보면 많은 외국에서 프라이버시보호의 입법화가 진전되었고, 1980 년 9 월에 OECD 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데이타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가 채택되어 그것이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행정감리위원회가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를 검토할 당시는 컴퓨터화되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 후 정보화의 진전도 놀랍게 진행되고 행정기관은 물론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을 비롯한 민간기업에 의한 컴퓨터화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41] 세째로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여론의 동향이다. 1981 년 2 월 총리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의 신고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진다는 반응이 38%, 프라이버시보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21%, 민간기업에서도 26%의 반응이 있었고, 프라이버시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79%, 민간기업에 대하여 78%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적부문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프라이버시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다.[42]
위의 「프라이버시보호연구회」는 많은 연구·검토를 거쳐 1982 년 7 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청에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입법의 토대가 될 것이고 그 주요한 내용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43] 그러한 의미에서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예상되는 개요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예상되는 입법의 개요

「프라이버시연구회」의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요지」와 「I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II 프라이버시보호 대책의 동향」 「III 프라이버시보호의 방안」 「IV 구체적 방책」으로 되어 있다.

1) 프라이버시침해의 가능성

보고서는 개인데이타의 처리에 따라 발생할 프라이버시침해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 업무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타 이외의 데이타를 수집, 축적하거나, 위법·부당한 수단으로 데이타를 수집하여 그것을 여러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 각종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데이타를 넓게 교환 또는 집중화하여, 데이타를 수집목적 이외에 이용하는 경우,

㉢ 잘못된 데이타, 과거의 특정한 때만의 데이타, 일부만의 데이타 등을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 또는 데이터처리담당직원이 부당하게 데이타화에 접근(access)하여 개인데이타를 변조하거나 가공하고 또한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그러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은 컴퓨터처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의 유형이 주목된다.

2) 프라이버시보호의 기본원칙 보고서는 일본의 개인데이타처리의 현황, 제외국의 법제, OECD 이사회권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그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수집제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적정관리자의 원칙, ㉤책임명확화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5 원칙은 OECD 의 이사회권고의 8 원칙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 연구회가 이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3) 법률로 규제되는 시스템 보고서는 「개인데이타의 시스템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하여, 법률의 규율대상을 개인데이타시스템에 한정하고 있다. 개인데이타시스템이라 함은 개인데이타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개인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는 파일 등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데이타의 처리(수집도 포함)를 총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스콤 등이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취재, 메모 등에 기록하여 기사로 보도하는 것과 같이 일과성이 강한 활동은 개인데이타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래의 취재

등을 위하여 개인데이타를 화일 등에 기록하고 검색되는 시스템을 가지면 그것은 규제대상이 된다.

4) 규제대상의 범위

규제대상에 관하여 ㉠ 데이타의 처리형태를 컴퓨터 처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수동식처리도 대상으로 할 것, ㉡ 대상부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의 공적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 ㉢ 데이타의 종류에 관해서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데이타에 한정할 것 등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동식처리에 관해서는 시스템의 성숙도, 처리데이타의 내용, 규모와 처리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과 내용에는 적정한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구체적 방책

프라이버시보호의 구체적 방책 즉 프라이시보호법의 내용으로 규정될 기본적사항에 관하여 그 연구회는 프라이버시보호의 기본 오원칙과 각국의 법률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10 항목을 구체적 규제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개인데이타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규제, ② 개인데이타시스템의 공시, ③ 개인데이타의 수집에 관한 규제, ④ 개인데이타의 이용·제공에 관한 규제, ⑤ 개인데이타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

⑥ 개인의 권리의 설정, ⑦ 수탁에 관한 규제, ⑧ 소관청, ⑨ 개인데이타의 국제유통에 관한 규제,

⑩ 벌칙과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지면의 제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책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만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공적부문내지 민간부문의 특정한 업종 등을 보유하는 시스템의 설치·변경은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소관청은 그 시스템을 일한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개인데이타의 수집과 이용의 제한에 관해서는 사상 · 신조 · 종교 · 범죄역 및 특정한 질병력과 같이 이른바 프라이버시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예민한 데이타는 특정하여, 그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데이타의 수집목적의 관점에서 그 규제를

적당하게 하여야 한다. 수집목적의 명확화, 필요최소한의 수집, 수집목적 내에서의 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 프라이버시보호의 조치가 엄격하게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데이타의 목적외의 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공익상 또는 관행과 프라이버시 의식에서 보아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열람청구, 정정·삭제청구와 같은 권리를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 개인데이타의 처리를 수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데이터관리자(위탁자)에 준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야 한다.

㉥ 법률에 위반한 행위중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것은 개인데이타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access)하거나, 데이타를 변개하거나 복사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커다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1) 이 점에 관하여 자제한 것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바람. 김남진 · 이강연, 공저 「주제중심 헌법」 470 면 이하; 서원우 · 이강연, 공저 「공법학연습」 184 면 이하.

2) Warren &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3) OECD 는 서방측 선진국가인 24 개국과 옵서버인 「유고슬라비아」로 구성된 국제기관이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농업, 노동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정부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 회의는 원칙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4) 기권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아랜드, 터키 등의 6 개국이다.

5)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 751 조의 배상책임과 형법 제 307 조 1 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6)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바람. 졸고 "헌법의 우위", 「월간고시」 1955 년 5 월호 : 졸고 “헌법의 본질과 기본가치”, 「외대」 20(1985)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

7) 상무성은 미국내의 다국적기업 150 개사에 대하여 OECD 가이드 라인의 시인여부를 묻는 질문서를 송부하였고, 109 개사로부터 찬성을 얻었다. 민간기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에 관한 움직임은 없으나,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에 대해 OECD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8) PA 는 제 5523 조 (a)항의 ①에서 PA 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성, 군사성, 대통령실(그 내부의 제기관을 포함) 모든 독립행정기관, 연방정부 법인 또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법인과 사인 중 일정한 수탁업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A 는 주나 사인(수탁업자는 제외하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5. U.S. C. § 5523(b).

10) Ibid § 552a(c).

11) Ibid § 552a(d).

12) Ibid § 552a (i).

13) Ibid § 552a(j). 그러나 Privacy Act of 1974 의 모든 조항이 적용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14) Ibid § 552a(k).

15) Public Law 93-579 Sec.5.

16) Ibid Sec. 5 (a) (4).

17) Ibid Sec. 5(c)(1)(A) - (D).

18) Ibid Sec. 5 (c)(2)(A) .

19) Ibid Sec. 5(e) (I) .

20) Ibid Sec. 5(h).

21) 5.U.S. C. § 5523 (o).

22) Ibid(p) .

23) Ibid(q) .

24) 동지 「쥬리스토」 742 호(1981), 255 면 참조 바람.

25) 상게 「쥬리스토」 265 면 참조.

26) 스웨덴은 데이타법만이 아니라 1974 의 신용정보법과 신용회복(Debt Recovery)법이 제정되어 있다

27) 이 점에 관해서는 「쥬리스토」 760 호 16 면을 참조 바람.

28) 그것은 형법전 제 4 장 제 9 조의 (a)항에 「불법도경죄」를 추가한 것을 말한다.

29) Lag 1970 : 800 om nann ooh bild , reklam.

30) Lag 1977 : 20 om TV- overrvakning.

31) DatenschutBgesetn von 7. 10. 1970 (Hess DatschG)

32) Landesgesetz gegen Mi βbreuchliche Datennutzung(Landesdatenschutzgesetz-L Dat G)

33) Gesetz zum Schut2 vor Mi βbrauch Personenbezogener Daten bei der Datenverarbeitung (Bund-

esdatenschutageseta – BDSG) vom 27. 1. 1977.

34) 1978 년 4 월 28 일에는 Berlin 에서, 1978 년 7 월 12 일에는 Berlin 에서, 1978 년 5 월 26 일에는 니이더작

센에서, 1978 딘 12 월 19 일에는 노르드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1978 년 5 월 17 일에는 짤란트에서, 1975 년

6 월 1 일에는 슐레스위히 홀슈타인에서, 1979 년 12 월 4 일에는 바덴 뷔르뎀베르크에서 제정되었고

Bremen 은 1977 년 12 월 19 일에 이미 제정하였다.

35) Merechtsrahmengesetz (MRRG) vom 16.8.1980.

36) 개인에 관하여 데이타에 관한 연방데이타보호법은 「특정한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자연인(당사자)의 인적 또는 물적 상황에 관한 개개의 데이타」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 2 조 1 항)

37) 주에서 데이터보호법을 제정할 대에는 그 주의 공적주체에는 연방데이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 7 조 2 항)

38) eine Date 의 의미는 데이타의 집적체로서, 그 속에서 특정의 데이타를 검색하는 경우에 당해 집적체에 집적되어 있는 데이타 전부를 조사할 필요없이 오직 성명, 생년월 일 기타의 항목(색인)에 의해서 필요한 데이타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 2 조 3 항 3 호).

39) 데이타의 기억(Speicherung) , 제공(Ubermittlung) , 변경 (Ver「Veranderung) 내지 삭제 (Leschung)함을 데이타처리 (Datenuerarbeitung) 라고 한다 (동법 제 1 조 1 항).

40) 이 점에 관해서는 「쥬리스토」No. 775 호(1982.10.1.) 13 면 참조.

41) 1976 년 3 월 컴퓨터의 이용이 3 만 5 천 세트인데 1981 년에는 8 만 8 천세트로 2.5 배 증가하였고,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전자계산기의 함수는 그 기간동안 1.4 배, 도부현에서는 2.7 배. 시정촌에서는 2.5 배, 특수법인에서도 2.4 배로 확대되었다.

42) 이 점에 관해서는 상게 「쥬리스토」 14 면 참조 바람.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여론조사」로 1981 년 5 월에 총리부광보실에서 발표하였음.

43) 이 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상게 「쥬리스토」760 호와 775 호 참조 바람.